

19.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제도 개선연구

자료제공 : 중앙컨설팅(주)

이 자료는 중앙컨설팅(주)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후원하여 지난 9월 18일 개최한 공청회 내용중 발췌한 주제발표문입니다. <편집자주>

1. 우리나라의 주택감리자정제도

가.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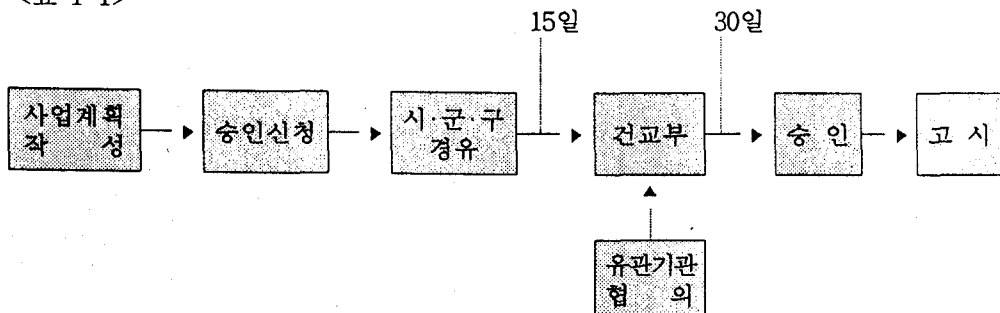
(1)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다음 규모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함)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주축법」 제33조제1항 참조).

- ①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② 10,000㎡이상의 대지

(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표 1-1>



(3) 사업계획승인의 제외

- ① 주거용 연면적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m²이하인 경우
-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미만인 경우

나. 주택감리자의 지정

우리나라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는 사업의 규모(20세대·30세대 등)에 따라 자격을 달리하는 바, 건축사에 의한 감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의 독특한 2원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택감리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을 범령화하고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장이 지정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일간지·시보계제 및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통보 등 적정공고방법을 이용하여 공개모집공고후 자격요건을 갖춘응모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응모서류 및 감리입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리자평가기준(예시)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3개회사를 선정후 이중 최저가격으로 응모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최저가낙찰제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자(사업주체·지정된 감리자 및 관련협회 등)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중 사업주체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거나 감리자격이 있는 전차용역자를 지정하는 등의 적절한 지정원칙을 별도로 마련·시행한다.

<표 1-2> 주택감리자평가기준(예시)

□ 분야별 배점

항 목	배 점	비 고
1. 참여감리원 · 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감리실적	60 (20) (20) (20)	· 감리원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현장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구분 평가
2.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5 (5) (10)	· 행정제재 등의 여부 검토
3. 업무량과 여유	10	
4. 감리수행실적	10	
5. 전차 용역업자	5	· 설계· 전차감리자 등의 여부

□ 분야별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1. 참여감리원 가. 자격증	6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건축사 기술사</th> <th>특 급 감리원</th> <th>고 급 감리원</th> <th>중 급 감리원</th> <th>초 급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산출방법 · 상주감리원 = 등급별배점×인원수 · 비상주감리원 = 등급별배점×인원수×1/2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 급 감리원	고 급 감리원	중 급 감리원	초 급 감리원	배 점	5	4	3	2	1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 급 감리원	고 급 감리원	중 급 감리원	초 급 감리원									
배 점	5	4	3	2	1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p>나. 해당분야 학력·경력</p>	(20)	<p>◦ 총점이 높은 회사순으로 1위를 20점으로 하며 순위별로 1점씩 감점하되, 10점을 기본점수로 함.</p> <p>◦ 배점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학력·경력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488 556 1170 693"> <thead> <tr> <th>구 분</th> <th>특 급 감리원</th> <th>고 급 감리원</th> <th>중 급 감리원</th> <th>초 급 감리원</th> <th>보 조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p>◦ 점수산출방법 : 자격증산출방법과 동일</p>	구 분	특 급 감리원	고 급 감리원	중 급 감리원	초 급 감리원	보 조 감리원	배 점	5	4	3	2	1																
구 분	특 급 감리원	고 급 감리원	중 급 감리원	초 급 감리원	보 조 감리원																									
배 점	5	4	3	2	1																									
<p>다. 해당분야 감리 참여경력</p>	(20)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88 865 1170 1029">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책 임 감리원</th> <th>분야별 감리원</th> <th>비상주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경 력</td> <td>20</td> <td>8</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 점수산출방법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주택건설공사 참여 개월수에 따라 배점</p> <p>※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설적은 8/10인정</p> <table border="1" data-bbox="488 1257 1170 1377"> <thead> <tr> <th>구 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4위</th> <th>5위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상 주</td> <td>8</td> <td>7</td> <td>6</td> <td>5</td> <td>4</td> </tr> <tr> <td>비상주</td> <td>4</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책 임 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경 력	20	8	8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상 주	8	7	6	5	4	비상주	4	3	2	1	0
구 분	계	책 임 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경 력	20	8	8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상 주	8	7	6	5	4																									
비상주	4	3	2	1	0																									
<p>2. 신용도 가. 부정당업자 지정기간</p>	15 (10)	<p>◦ 행정처분사항등 검토</p> <p>-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488 1557 1170 1676"> <thead> <tr> <th>구 분</th> <th>없음</th> <th>4월미만</th> <th>8월미만</th> <th>12월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없음	4월미만	8월미만	12월이상	점 수	10	8	6	4																		
구 분	없음	4월미만	8월미만	12월이상																										
점 수	10	8	6	4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나. 재정상태 건 실 도	(5)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점수부여 <table border="1" data-bbox="555 415 1237 556"> <tr> <td>구 분</td> <td>1위</td> <td>2위</td> <td>3위</td> <td>4위</td> <td>5위이상</td> </tr> <tr> <td>점 수</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상	점 수	5	4	3	2	1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상									
점 수	5	4	3	2	1									
3. 업무량과 여유 (감리수행여유)	10	◦ 점수 = (사업잔여기간합계항목 등위점수+건수항목 등위점수)÷2 ※ 현재 감리업무수행중인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건수가 적을수록 각각 높은 점수 부여 <table border="1" data-bbox="555 614 1237 913"> <tr> <td>구 분</td> <td>1위</td> <td>2위</td> <td>3위</td> <td>4위이하</td> </tr> <tr> <td>배 점</td> <td>10</td> <td>8</td> <td>6</td> <td>4</td> </tr> </table>	구 분	1위	2위	3위	4위이하	배 점	10	8	6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이하										
배 점	10	8	6	4										
4. 감리업무수행실적	10	◦ 배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555 1122 1237 1238"> <tr> <td>구 분</td> <td>1위</td> <td>2위</td> <td>3위</td> <td>4위이하</td> </tr> <tr> <td>배 점</td> <td>10</td> <td>8</td> <td>6</td> <td>4</td> </tr> </table>	구 분	1위	2위	3위	4위이하	배 점	10	8	6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이하										
배 점	10	8	6	4										
5. 전차용역여부	5	◦ 순위결정 :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한 총감리비 수주합계 순위별 ◦ 전차용역업자(설계·감리) · 동일회사시 5점 · 계열회사시 3점												
6. 지역실정 파악 (가산)		◦ 해당 시·도(시·군)에 주된 사무소 설치 : 5점 ◦ 해당 시·도(시·군)에 상주 사무소 설치 : 3점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용여부 결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7. 상훈(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다음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일 경우 높은 상훈의 점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청 장 : 3점 - 시장·장관 : 4점 - 국 무 총 리 : 5점 - 대 통 령 : 6점
8. 기타(가산·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리자의 업무능력 및 감리기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책임자를 지정가능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경우의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청 장 : 배점×1.2 - 시장·장관 : 배점×1.3 - 국 무 총 리 : 배점×1.4 - 대 통 령 : 배점×1.5 <p>※ 참여감리원 항목증 가, 자격증 나, 해당분야 경력 항목에 적용</p>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자격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미만 : 1개월×0.9 - 3월이상~6월미만 : 1개월×0.8 - 6월이상~9월미만 : 1개월×0.7 - 9월이상~12월미만 : 1개월×0.6 - 12월이상 : 1개월×0.5 <p>※ 참여감리원 항목증 가, 자격증 나, 해당분야 경력분야 항목에 적용</p> ◦ 관리자가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과거 제출한 적이 있고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적이 있는 등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교체·응모제한 또는 총점 5점 감점

※ 위 관리자 평가기준(예시)의 배점과 항목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점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다. 주택감리의 특징

첫째 : 주택감리의 대상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즉 ①20호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 ②10,000㎡이상의 대지조성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다.

셋째 : 감리자의 자격구분

- ①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건기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감리자의 자격이 있다.

넷째 :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 (1)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이상
- (2)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이상

다섯째 : 최저가낙찰제도

여섯째 : 3개 회사의 Short List

일곱째 : 전면책임감리

총공사비(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50억원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한다.

2. 우리나라 주택감리자지정제도의 문제점

가. 감리구분의 기준 모호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가 「건축법」에서는 수량 또는 세대기준, 즉 300세대이상인 주택

건설공사, 「전기법」에서는 금액기준, 즉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300세대와 총공사비 50억원 및 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기준 상호간에 모호점이 있다.

나. 최저가낙찰제도

최저가낙찰제도는 공정경쟁 또는 자유경쟁 내지 시장경제원리에는 부합되지만, 「주축법」 제33조의6의 제정취지가 전술 제1항에서 언급한 국민정서 내지 공공성에 있다고 할 때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감리의 방지수단에는 미흡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3개사회로 제한된 Short List

「지정지침」 제3-4-(1)항에 의하면 PQ평가후 상위득점자 3개회사를 최종후보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리자의 경쟁참여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라. PQ 심사항목의 판별력 부족

감리용역의 특성상 참여감리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60점의 배점은 지나치게 높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에 관계없이 해당분야기술자수에 따라 20점 배점), 업체평가의 주요항목인 감리수행실적에 10점을 배점하는 것은 오히려 과소책정되었다고 본다.

마. 기술력에 대한 배려 미흡

우리나라의 현행 감리자평가기준으로는 감리자의 기술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감리, 나아가서는 감리 내지 건설전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가. 감리구분기준의 재정립

이 경우의 문제점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이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이 요망된다.

(1) 단기개선안

단기적으로 현행기준을 적용하되, 중·장기개선안의 시행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중·장기개선안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기준인 총공사비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기준인세대수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연면적기준으로 개선함이 요망된다.

나. 낙찰제도의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지침」상의 최저가낙찰제도는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2원화가 요망된다.

적격심사제도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며,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예정용역비 또는 총공사비의 2.5%의 90% 직상낙찰제로 함이 시행의 일관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PQ지정자의 확대

(1) 단기개선안

PQ심사결과 득점이 60점이상인 회사는 모두 가격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 (2) 중·장기개선안
- 단기개선안 유지

라. PQ심사기준의 개정

〈표 3-1〉 주택감리자 PQ심사기준(안)

심사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심사방법												
1. 감리원수	가. 전체 나. 해당분야	40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감리원의 수에 따라 1위를 만점으로 하며 순위별로 1점씩 감점하되 전체는 5점, 해당분야는 10점을 기본점수로 함. 												
2. 용역수행 실적	가. 동일용역 나. 유사용역	30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감리 및 그와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을 비교하여 평점 1위를 만점으로 하여 순위별로 1점씩 감점하되 동일용역은 10점, 유사용역은 5점을 기본점수로 함. 												
3. 재무상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에 따라 평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부채비율</th> <th>200% 미만</th> <th>250% 미만</th> <th>300% 미만</th> <th>350% 미만</th> <th>500%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부채비율	200% 미만	250% 미만	300% 미만	350% 미만	500% 미만	점수	5	4	3	2	1
부채비율	200% 미만	250% 미만	300% 미만	350% 미만	500% 미만										
점수	5	4	3	2	1										
4. 경영상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관리·은행관리·화의진행 기타 타사에 의한 재정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0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5점 												

〈표 3-1〉 주택감리자 PQ심사기준(안)

심사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심사방법												
5. 신인도	가. 업무정지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점 <table border="1"> <tr> <td>기간</td> <td>없음</td> <td>2월 미만</td> <td>4월 미만</td> <td>8월 미만</td> <td>8월 이상</td> </tr> <tr> <td>점수</td> <td>7</td> <td>4</td> <td>3</td> <td>2</td> <td>0</td> </tr> </table>	기간	없음	2월 미만	4월 미만	8월 미만	8월 이상	점수	7	4	3	2	0
		기간		없음	2월 미만	4월 미만	8월 미만	8월 이상							
점수	7	4	3	2	0										
6. 전차용역과의 관련도	나. 사업계획 승인권자평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평가 - 종전용역의 용역수행상태·완성도·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적의 평점 												
		10													
7. 가산	가. 상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 전차용역수행후 경과기간의 장단에 따라 업체와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각기 평점 <table border="1"> <tr> <td>경과기간</td> <td>3년 미만</td> <td>5년 미만</td> <td>10년 미만</td> <td>10년 이상</td> </tr> <tr> <td>점수</td> <td>5</td> <td>4</td> <td>3</td> <td>0</td> </tr> </table>	경과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5	4	3	0		
		경과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5	4	3	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받은 상훈에 따라 아래의 점수를 가산 <table border="1"> <tr> <td>상훈</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p>E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표창 D : 광역시장·도지사·장관 등의 표창 C : 국무총리 표창 B : 대통령 표창 A : 훈장·포장 등</p>	상훈	A	B	C	D	E	점수	5	4	3	2	1
상훈	A	B	C	D	E										
점수	5	4	3	2	1										

심사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심사방법								
	나. 지역 친화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 해당 시·도(군·구)에 주된 사무소 또는 상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주된사무소</th> <th>상주사무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주된사무소	상주사무소	점수	3	2
구분	주된사무소	상주사무소									
점수	3	2									

※ 위 감리자 PQ 심사기준(안)의 배점과 항목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점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현행 주택감리자평가기준 (<표 1-2>)과 주택감리자 PQ심사기준안 (<표 3-1>)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표 3-2> 주택감리자 PQ심사기준의 비교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심사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1. 참여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20) - 해당분야경력 (20) - 해당분야 감리 실적 (20) 	60	1. 감리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15) - 해당분야 (25) 	40
2. 신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0) - 재정상태건실도 (5) 	15	2.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등 (7) - 사업계획 승인권자 평점 (3) 	10
3. 업무량과여유		10	3. 재무·경영상태		10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심사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4. 감리수행 실적		10	4. 용역수행실적	- 동일용역 - 유사용역	30 (20) (10)
5. 전차용역업자		5	5. 전차용역관련도	- 업체 - 책임기술자	10 (5) (5)
6. 지역설정과약 (가 산)		5	6. 가산	- 지역친화도	8 (3)
7. 상훈(가산)		6		-상훈	(5)

(1) 단기개선안

현행 주택감리자평가기준을 주택감리자 PQ심사기준으로 개정하고,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장기개선안

기술위주의 평가제도(QBS)를 도입한다.

마. 기술·가격분리입찰의 부분시행

현행 주택감리자선정방식은 PQ심사후 가격경쟁의 단순·획일적인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상·주공 등의 복합건축물인 주택건설공사 또는 15층이상의 고층공동주택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기술력평가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수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선정방식은 기술적격심사, 즉 가격가중치가산 방식에 의한 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방식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1) 단기 개선안

주상·주공복합건축물인 주내(다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또는 15층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있어서는 가격가중치가산방식에 의한 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을 시행한다.

(2) 중·장기개선안

제(1)항의 가격가중치가산방식에 의한 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방식을 특수주택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20,000㎡ 이상인 모든 주택건설공사로 확대·시행한다.

주택회보